

2010년 수입식품 현황

Status of Imported Foods in 2010

오금순*, 최은주, 유선영, 김윤숙, 홍헌우

Keum Soon Oh*, Eun Ju Choi, Sun-Young Yoo, Yun-Suk Kim, Heon-Woo Hong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Food Import Division, Food Safety Bureau,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이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물류환경개선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로 곡물 및 가공식품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로 '10년도에는 '95년도 대비 건수는 209%, 중량은 38%, 금액은 262% 증가하였다(그림 1).

수입식품 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보관 후 수입자는 관세

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로그인한 후 통관단일창구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되어 우리나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적합한 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부적합 제품은 제조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다(1-8).

우리나라 수입식품 제도를 살펴보면, 수입통관은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하며, 그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으로 공고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고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그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9,10). 따라서, 식품은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검역과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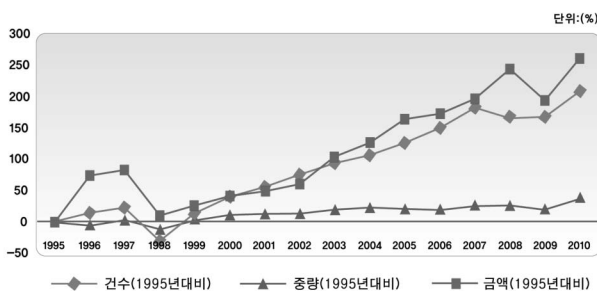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수입 현황

*Corresponding author: Keum Soon Oh
 Food Import Division, Food Safety Bureau,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187, Osongsaengmyeong2-ro, Gangseo-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363-951 Korea
 Tel: +82-43-719-2157
 Fax: +82-43-719-2150
 e-mail: puregold@kfda.go.kr

및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농림수산물품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검역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11,12).

수입식품의 검사종류로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로 구분하며(1,2), 서류검사(Document review)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며, 대상 식품으로는 외화확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조용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식품,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 포함), 판매 목적의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용 식품 등이다(그림 2).

관능검사(Sensory test)는 제품의 성상,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한다. 대상 식품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 서류검사의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식품, 보세구역 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

으로서 그 물량이 수거필요량의 10배 이하인 식품, 정밀 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동일한 식품 등 이다.

정밀검사(Laboratory test)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검사 대상 식품은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 제기된 식품,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모든 식품,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 등을 검사한다.

무작위표본검사(Random sampling test)는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이렇게 검사종류별로 해당되는 식품을 수입단계에서 검사하여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등의 기준 및 규격(3-8)을 위반한 식품은 전량 제조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한 수입식품은 년 평균 약 260,000여건, 중량은 11,700,000여톤, 금액은 8,900,000천달러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이 공포(2011.8.19)되었으며,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제1항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는데(13), 이중에는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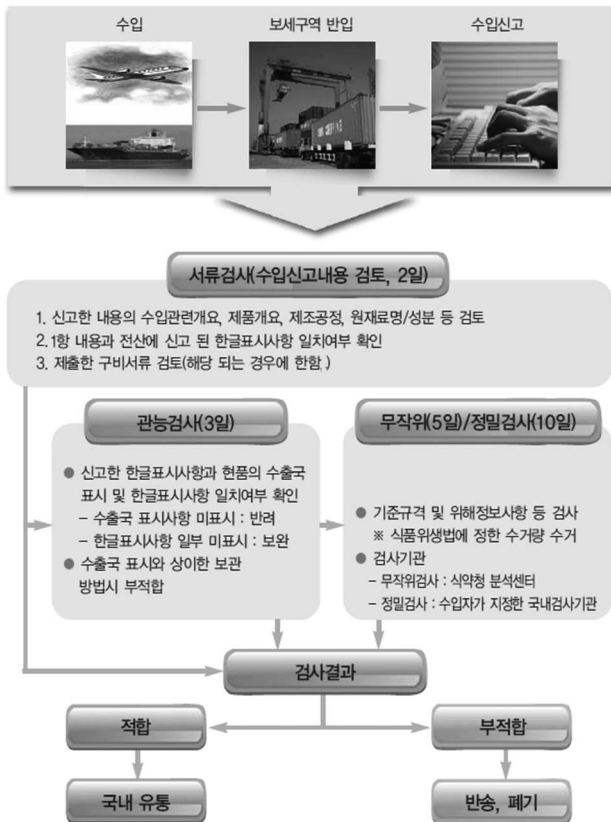


그림 2. 수입식품의 신고수리 절차

의 경우만 해당)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중 서류검사에서는 동일사동일식품의 정의 중 수입자가 삭제되었고, 착색되지 않은 유리제의 경우 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 또한 서류검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으로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등과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식품등, 농·임산물, 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이 서류검사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참고로, 수입식품 중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3개 기관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로 통합(2011.6) 되었다. 이들 식품들(축산물, 축산물가공품,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 또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수입된 식품등은 2006년부터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소비자들뿐 만 아니라 산업체 및 학계 등에게 수입식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신고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현황을 분석하여 1998년부터는 「수입식품등 검사연보」를 매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II. 수입식품 현황

2010년 수입 신고된 건수는 중국, 일본, 미국 등 129개 국가(제조국 기준)로부터 총 293,988건('09년 255,341건), 중량은 12,905천톤('09년 11,302천톤), 금액은 10,358백만달러('09년 8,434백만달러) 수입되었으며, '09년도에 비해 건수는 15.1%, 중량은 14.2%, 금액은 22.8% 증가하였다(표 1).

1.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수입현황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구분하여 검사하며, 2010년에는 서류검사 183,109건(62.3%), 관능검사 25,974건(8.8%),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25,474건 포함; 8.7%) 84,905건(28.9%)으로, 정밀검사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약 2% 감소하였다(표 2).

2. 품목군별 수입현황

품목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별지 제19호 서식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의 신고제품구분(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2010년에 품목군별 수입건수는 가공식품(53.6%), 기구 또는 용기·포장(19.4%), 농·임산물(13.4%), 식품첨가물(11.4%), 건강기능식품(2.2%) 순이고, 중량은 농·임산물(59.8%), 가공식품(36.5%), 식품첨가물(1.8%), 기구 또는 용기·포장(1.8%), 건강기능식품(0.1%)의 순, 금액

표 1. 연도별 수입 현황('06 ~ '10년)

년도	수입건수	증가율(%)	중량(kg)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6년	238,539	10.7 ↑ ¹⁾	11,227,512,964	0.3 ↓ ¹⁾	7,811,984,190	3.0 ↑ ¹⁾
2007년	270,168	13.3 ↑	11,798,942,964	5.1 ↑	8,449,259,832	8.2 ↑
2008년	254,809	5.6 ↓	11,731,828,599	0.6 ↓	9,860,939,224	16.7 ↑
2009년	255,341	0.2 ↑	11,301,537,120	3.7 ↓	8,434,080,763	14.5 ↓
2010년	293,988	15.1 ↑	12,905,439,553	14.2 ↑	10,357,748,257	22.8 ↑

¹⁾ 2005년도 수입건수 215,494건, 중량 11,261,441,723kg, 금액 7,586,286,693\$을 기준으로 2006년도 증가율 산출

표 2. 검사종류별 연도별 수입 건수 현황('06 ~ '10년)

년도	수입건수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포함)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2006년	238,539	165,007 (69.2%)	24,010 (10.0%)	49,522 (20.8%)	38,057 (16.0%)	11,465 (4.8%)
2007년	270,163	179,985 (66.6%)	27,972 (10.4%)	46,104 (23.0%)	62,206 (17.1%)	16,102 (5.9%)
2008년	254,809	172,909 (67.9%)	23,863 (9.3%)	58,037 (22.8%)	43,281 (17.0%)	14,756 (5.8%)
2009년	255,341	149,057 (58.4%)	27,378 (10.7%)	78,906 (30.9%)	50,585 (19.8%)	28,321 (11.1%)
2010년	293,988	183,109 (62.3%)	25,974 (8.8%)	84,905 (28.9%)	59,431 (20.2%)	25,474 (8.7%)

은 가공식품(44.8%), 농·임산물(38.0%), 기구 또는 용기·포장(8.8%), 식품첨가물(6.3%), 건강기능식품(2.1%) 순으로 수입되었다(표 3).

수입건수는 '09년도에 비해 기구 또는 용기·포장(28.6%), 농·임산물(19.0%), 가공식품(12.7%), 식품첨가물(7.7%)은 증가한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7.2% 감소하였으며, 중량은 농·임산물(18.3%), 식품첨가물(16.4%), 기구 또는 용기·포장(9.6%), 가공식품(8.1%)은 증가한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12.1% 감소하였고, 금액은 가공식품(26.2%), 농·임산물(24.2%), 식품첨가물(18.9%), 기구 또는 용기·포장(9.2%), 건강기능식품(7.6%) 증가하였다.

3. 품목별 수입현황

2010년에는 129개국에서 농·임산물 532개('09년 522개), 가공식품 231개('09년 219개), 건강기능식품 119개('09년 200개), 식품첨가물 528개('09년 521개), 기구 또는 용기·포장 154개('09년 125개), 총 1,555개('09년 1,587개) 품목을 수입하였다.

품목군별로 주요 수입품목(중량기준)은 '09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농·임산물(532개 품목)은 옥수수, 밀, 대두, 바나나, 쌀(매현미) 순으로 '09년도에는 밀, 옥수수, 대두, 쌀(매현미), 카사바 순이었다. 가공식품(231개 품목)은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천일염, 배추김치, 정제소금, 당류가공품 순, 건강기능식품(119개

표 3. 품목군별 연도별 수입 현황('06 ~ '10년)

년도	수입건수 (증감율, %)	농·임산물 (증감율, %)	가공식품 (증감율, %)	건강기능식품 (증감율, %)	식품첨가물 (증감율,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증감율, %)
2006년	238,539 (10.7 ↑) ¹⁾	35,643 (7.8 ↑) ¹⁾	141,474 (11.9 ↑) ¹⁾	7,223 (3.1 ↑) ¹⁾	30,038 (6.4 ↑) ¹⁾	24,161 (16.2 ↑) ¹⁾
2007년	270,163 (13.3 ↑)	39,277 (10.2 ↑)	165,129 (16.7 ↑)	6,988 (3.3 ↓)	31,073 (3.4 ↑)	27,696 (14.6 ↑)
2008년	254,809 (5.7 ↓)	35,026 (10.8 ↓)	155,536 (5.8 ↓)	6,533 (6.5 ↓)	31,423 (1.1 ↑)	26,291 (5.1 ↓)
2009년	255,341 (0.2 ↑)	33,118 (5.5 ↓)	139,782 (10.1 ↓)	7,062 (8.1 ↑)	31,111 (1.0 ↓)	44,268 (68.4 ↑)
2010년	293,988 (15.1 ↑)	39,413 (19.0 ↑)	157,570 (12.7 ↑)	6,555 (7.2 ↓)	33,503 (7.7 ↑)	56,947 (28.6 ↑)

¹⁾ 2005년은 215,494건 수입, 농·임산물은 33,051건, 가공식품 126,422건, 건강기능식품 7,006건, 식품첨가물 28,225건, 기구 또는 용기·포장 20,790건임

표 3. 계속

(단위 : kg)

년도	수입건수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2006년	11,227,512,964 (0.3 ↓) ¹⁾	7,147,745,728 (2.7 ↓) ¹⁾	3,706,986,520 (4.3 ↑) ¹⁾	11,254,894 (14.6 ↓) ¹⁾	172,740,029 (3.3 ↑) ¹⁾	188,785,793 (5.9 ↑) ¹⁾
2007년	11,798,942,964 (5.1 ↑)	7,261,434,031 (1.6 ↑)	4,120,586,646 (11.2 ↑)	10,009,298 (11.1 ↓)	193,753,402 (12.2 ↑)	213,159,587 (12.9 ↑)
2008년	11,731,828,599 (0.6 ↓)	6,887,118,713 (5.2 ↓)	4,406,699,278 (6.9 ↑)	8,233,512 (17.7 ↓)	218,179,167 (12.6 ↑)	211,597,929 (0.7 ↓)
2009년	11,301,537,120 (3.7 ↓)	6,526,682,835 (5.2 ↓)	4,355,840,634 (1.2 ↓)	7,872,090 (4.4 ↓)	204,190,678 (6.4 ↓)	206,950,882 (2.2 ↓)
2010년	12,905,439,553 (14.2 ↑)	7,724,124,634 (18.3 ↑)	4,709,927,638 (8.1 ↑)	6,919,176 (12.1 ↓)	237,729,889 (16.4 ↑)	226,738,216 (9.6 ↑)

¹⁾ 2005년은 11,261,441,723kg 수입, 농·임산물은 7,348,692,248kg, 가공식품 3,554,103,819kg, 건강기능식품 13,173,688kg, 식품첨가물 167,172,000kg, 기구 또는 용기·포장 178,299,968kg임

표 3. 계속

(단위 : \$)

년도	수입건수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증감율, %)
2006년	7,811,984,190 (3.0 ↑) ¹⁾	3,048,728,368 (30.5 ↑) ¹⁾	3,459,744,063 (5.6 ↓) ¹⁾	229,731,978 (60.5 ↓) ¹⁾	469,812,354 (1.2 ↓) ¹⁾	603,967,427 (14.1 ↑) ¹⁾
2007년	8,449,259,832 (8.2 ↑)	3,121,232,166 (2.4 ↑)	3,885,229,643 (11.4 ↑)	215,050,950 (6.4 ↓)	519,267,705 (10.5 ↓)	708,479,368 (17.3 ↑)
2008년	9,860,939,224 (16.7 ↑)	3,990,610,381 (27.8 ↑)	4,339,584,725 (11.7 ↑)	220,549,819 (2.6 ↑)	615,409,449 (18.5 ↑)	694,784,850 (1.9 ↓)
2009년	8,434,080,763 (14.5 ↓)	3,169,655,626 (20.6 ↓)	3,674,695,756 (15.3 ↓)	209,671,458 (4.9 ↓)	550,152,783 (10.6 ↓)	829,905,140 (19.5 ↓)
2010년	10,357,748,257 (22.8 ↑)	3,935,568,194 (24.2 ↑)	4,636,614,641 (26.2 ↑)	225,666,851 (7.6 ↑)	653,993,564 (18.9 ↑)	905,905,007 (9.2 ↑)

¹⁾ 2005년은 7,586,286,693\$ 수입, 농·임산물은 2,336,561,479\$, 가공식품 3,663,830,692\$, 건강기능식품 581,052,157\$, 식품첨가물 475,362,977\$, 기구 또는 용기·포장 529,479,388\$임

표 4. 품목별(중량기준, 상위 10개) 수입신고 현황

번호	품목명	수입건수	중량(kg)		금액(\$)
			2010년	2009년(순위)	
			합계	293,988	
1	옥수수/알곡	738	2,227,729,038	1,443,745,652(3)	602,834,888
2	밀/밀(제분용)	759	2,163,230,575	1,980,289,331(1)	524,686,501
3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1,090	2,044,192,280	1,918,916,072(2)	1,305,906,612
4	대두/건조	647	1,254,058,958	1,122,671,356(4)	588,625,307
5	천일엽	262	391,947,071	319,868,978(5)	25,464,183
6	바나나/신선, 냉장	1,070	289,533,503	182,707,492(8)	177,634,849
7	쌀/매현미/알곡	63	229,196,258	226,135,230(6)	162,280,557
8	배추김치	8,948	194,955,834	148,001,991(11)	100,855,282
9	정제소금	180	189,287,697	152,868,928(9)	12,355,184
10	당류가공품	4,411	170,384,409	146,537,628(12)	108,536,363

표 5. 국가별(상위 20개국) 수입현황

번호	국 가	건수	비고 (‘09년)	국 가	중량(kg)	비고 (‘09년)	국 가	금액(\$)	비고 (‘09년)
		293,988			12,905,439,553			10,357,748,257	
1	중국	88,111	1	미국	3,869,207,524	1	미국	2,355,516,346	2
2	일본	46,350	2	호주	2,608,104,906	2	중국	2,188,516,234	1
3	미국	42,532	3	중국	2,282,269,306	3	호주	1,045,731,166	3
4	프랑스	11,716	4	브라질	837,013,390	4	일본	514,202,155	5
5	이탈리아	10,226	5	필리핀	428,959,158	6	브라질	447,169,513	4
6	독일	8,681	6	헝가리	297,406,893	5	필리핀	291,088,597	6
7	태국	8,542	7	태국	271,209,394	9	태국	270,230,152	9
8	베트남	7,154	8	아르헨티나	268,266,664	12	영국	246,182,821	8
9	영국	5,476	9	캐나다	237,104,480	10	베트남	235,379,612	7
10	필리핀	4,699	11	세르비아	224,395,910	43	말레이시아	231,439,522	10
11	호주	4,411	10	말레이시아	193,351,061	11	아르헨티나	205,705,488	11
12	인도네시아	4,282	13	과테말라	176,045,613	8	인도네시아	189,778,228	15
13	칠레	3,915	12	인도네시아	174,583,333	13	프랑스	166,479,532	12
14	말레이시아	3,222	14	베트남	151,783,618	7	독일	147,443,034	14
15	캐나다	3,028	15	인디아	97,464,644	14	캐나다	140,700,511	13
16	북한	2,990	18	독일	69,187,199	15	칠레	139,335,009	19
17	스페인	2,934	19	일본	60,362,560	16	인디아	133,261,640	21
18	스위스	2,895	20	칠레	57,176,677	17	이탈리아	130,681,618	16
19	싱가포르	2,834	17	남아프리카	55,866,138	20	뉴질랜드	114,554,526	17
20	벨기에	2,707	16	뉴질랜드	51,096,062	18	과테말라	103,657,051	20

품목)은 비타민/무기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 제품,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 제품(원료성), 비타민 순이며, 식품첨가물(528개 품목)은 초산전분, L-글루타민산 나트륨, 혼합제제, 인산, 탄산나트륨 순이었다. 한편, 기구 또는 용기·포장(154개 품목)은 기구류 중 폴리에틸렌, 스테인레스제, 도자기제, 포장류 중 폴리에틸렌, 기구류 중 유리제(무착색) 순이었다.

총 수입 품목(1,555개) 중 상위 10개 품목(중량기준)은 원료성 제품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옥수수, 밀,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원당, 대두유 등), 대두, 천일염 순이었다(표 4).

4. 국가별 수입현황

2010년에는 총 129개 국가로부터 수입되었고, 이중 상위 5개 국가의 수입건수로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 중량은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필리핀 순, 금액은 미국, 중국, 호주, 일본, 브라질 순으로 수입되었는데, 상위 5개 국가의 수입 점유율은 건수는 약 67%, 중량은 약 77%, 금액은 63%를 차지하였다.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09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중량은 멕시코(18위)는 제외되고 새로이 세르비아가 10위로 상승하였고, 금액은 헝가리(18위)는 제외된 반면 인디아가 새로이 17위로 상승하였다(표 5).

6개의 대륙별(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는 35개국, 유럽은 36개국, 오세아니아 10개, 남아메리카 10개국, 북아메리카 15개국, 아프리카 23개국에서 수입하였고, 주로 수입한 대륙은 아시아로서 건수는 60.8%, 중량은 29.5%, 금액은 42.0%이며, 북아메리카는 각각 16.0%, 33.4%, 25.8% 차지하였다(표 6).

표 6. 대륙별 수입신고 현황

구분	건수	중량(kg)	금액(\$)
합계	293,988	12,905,439,799	10,357,748,256
아시아	178,821	3,812,745,016	4,345,258,017
유럽	53,310	834,715,019	1,184,955,111
오세아니아	6,573	2,678,757,634	1,168,282,779
남아메리카	7,157	1,194,377,286	918,084,278
북아메리카	47,106	4,314,766,110	2,675,754,453
아프리카	1,021	70,078,734	65,413,618

III. 수입단계에서 부적합 현황

수입통관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다.

2010년에 수입된 식품의 부적합 건수는 1,143건(0.39%), 5,637톤(0.04%), 13,270천달러(0.13%)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부적합 비율로 건수는 0.43%, 중량은 0.06%, 금액은 0.14%로 매년 유사한 수준이었다(표 7).

1. 품목군별 부적합 현황

2010년 품목군별 부적합은 건수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2.15%), 가공식품(0.47%), 기구 또는 용기·포장(0.28%), 농·임산물(0.18%), 식품첨가물(0.08%) 순이었고, 중량은 건강기능식품(0.44%), 기구 또는 용기·포장(0.11%), 가공식품(0.09%), 농·임산물(0.01%), 식품첨가물(0.01%) 순으로 2008년을 제외하고 유사한 비율이었고, 금액은 건강기능식품(0.62%), 가공식품(0.20%), 기구 또는 용기·포장(0.12%), 식품첨가물(0.04%), 농·임산물(0.03%) 순이었다(표 8).

2. 품목별 부적합 현황

2010년에 수입 신고된 총 1,555개 품목 중 222개 품목에서 부적합 되었는데, 농·임산물(37개 품목)은 옥수수 11건(519톤, 143천달러), 지황/뿌리 7건(168톤, 218천달러), 칡/뿌리 5건(76톤, 52천달러) 순이고, 가공식품(90개 품목)은 조미건어포류 62건(581톤, 3,081천달러), 천연향신료 53건(628톤, 1,101천달러), 기타가공품 52건(64톤, 331천달러)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41개 품목)은 비타민/무기질 31건(4톤, 234천달러), 비타민 25건(6톤, 324천달러),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8건(0.5톤, 64천달러) 순이고, 식품첨가물(14개 품목)은 올레오레진캡시컴 7건(8톤, 145천달러), 심황색소 3건(0.6톤, 8천달러), 차카테킨 3건(0.2톤, 4천달러) 순이었고, 기구 또는 용기·포장(40개 품목)은 기구류중 스테인레스제 57건(95톤, 378천달러), 폴리프로필렌 13건(26톤, 62천달러), 도자기제 11건(4톤, 40천달러) 순이었다(표 9).

3. 국가별 부적합 현황

2010년은 129개국에서 수입, 부적합은 43개국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국가는 '06년(45개국),

표 7. 연도별 부적합 현황

연도	건수	비율(%)	중량(kg)	비율(%)	금액(\$)	비율(%)
2006년	922	0.36	4,682,762	0.04	9,127,735	0.12
2007년	1,448	0.54	7,467,783	0.06	13,567,044	0.16
2008년	1,020	0.40	13,128,643	0.11	13,408,925	0.14
2009년	1,229	0.48	5,375,763	0.05	11,227,836	0.13
2010년	1,143	0.39	5,637,277	0.04	13,270,510	0.13

표 8. 품목군별 연도별 부적합 현황('06 ~ '10년)

연도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6년	60	0.17	648	0.46	170	2.35	22	0.07	22	0.09
2007년	67	0.17	1,156	0.70	166	2.38	30	0.10	29	0.11
2008년	48	0.14	778	0.50	137	2.10	23	0.07	34	0.13
2009년	37	0.11	718	0.51	114	1.61	30	0.10	330	0.75
2010년	70	0.18	744	0.47	141	2.15	26	0.08	162	0.28

표 9. 품목별(상위 5개 품목) 부적합 현황

품목군	품목명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kg)	금액(\$)
	합계(222개 품목)	1,143	5,637,277	13,270,510
농임산물	소계(37개 품목)	70	1,074,226	1,294,002
	옥수수/알곡	11	519,195	142,734
	지황/뿌리/건조	7	167,834	217,555
	참/뿌리(갈근)/건조	5	76,197	52,225
	산수유/열매/건조	4	32,343	213,209
	구기자/건조	3	21,972	30,662
가공식품	소계(90개 품목)	744	4,262,321	9,231,319
	조미건어포류	62	581,212	3,081,004
	천연향신료	53	627,732	1,101,309
	기타가공품	52	64,296	330,730
	소스류	50	43,784	133,036
	향신료조제품	45	305,220	307,065
건강기능식품	소계(41개 품목)	141	30,721	1,401,491
	비타민/무기질	31	4,041	234,254
	비타민	25	6,432	323,926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8	395	35,466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8	538	63,549
	글루코사민 제품	6	622	36,721
식품첨가물	소계(14개 품목)	26	20,955	282,214
	올레오레진캡시킵	7	8,215	145,048
	심황색소(울금색소)	3	570	8,392
	차카테킨	3	225	3,825
	이리단백	2	240	26,140
	포도종자추출물	2	300	8,690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소계(40개 품목)	162	249,054	1,061,482
	기구류중 스테인레스제	57	95,451	377,913
	기구류중 폴리프로필렌	13	25,814	61,980
	기구류중 도자기제	11	3,986	39,947
	기구류중 멜라민수지	8	12,244	37,947
	기구류중 알루미늄제	7	6,733	52,099

‘07년(44개국), ‘08년(47개국), ‘09년(46개국)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가별로 부적합 건수는 중국 347건(‘09년 449건), 미국 124건(‘09년 151건), 베트남 106건(‘09년 52건), 인디아 73건(‘09년 31건), 일본 73건(‘09년 85건) 순이었고, 중량으로는 중국 3,653톤(‘09년 3,612톤), 베트남 642톤(‘09년 189톤), 인디아 616톤(‘09년 38톤), 미국 103톤(‘09년 762톤), 태국 89톤(‘09년 167톤) 순이었다. 금액은 중국 5,292천달러(‘09년 6,081천달러), 베트남

3,011천달러(‘09년 725천달러), 미국 1,156천달러(‘09년 1,303천달러), 인디아 579천달러(‘09년 168천달러), 태국 487천달러(‘09년 242천달러) 순이었다.

이중 부적합 건수 상위 20개국 중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은 스리랑카(4.12%), 파키스탄(3.29%), 인디아(2.79%), 아르헨티나(2.01%), 베트남(1.48%) 순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09년도 부적합 비율은 각각 스리랑카(3.99%), 파키스탄(3.19%), 인디아(1.38%), 아르헨티나(0.12%), 베트남(0.83%)이었다(표 10).

표 10. 국가별(상위 20개국) 부적합 건수 현황

순위	제조국	2010년			2009년		
		수입건수	부적합건수	비율(%)	수입건수	부적합건수	비율(%)
	합계	293,988	1,143	0.39	255,341	1,229	0.48
1	중국	88,111	347	0.39	73,770	449	0.61
2	미국	42,532	124	0.29	38,825	151	0.39
3	베트남	7,154	106	1.48	6,242	52	0.83
4	인디아	2,613	73	2.79	2,244	31	1.38
4	일본	46,350	73	0.16	40,467	85	0.21
6	태국	8,542	44	0.52	6,787	62	0.91
7	필리핀	4,699	37	0.79	4,454	22	0.49
8	독일	8,681	33	0.38	7,160	40	0.56
9	이탈리아	10,226	32	0.31	8,426	67	0.80
10	대만	2,640	27	1.02	2,145	43	2.01
10	인도네시아	4,282	27	0.63	3,452	26	0.75
12	파키스탄	669	22	3.29	689	22	3.19
12	프랑스	11,716	22	0.19	10,800	20	0.19
14	캐나다	3,028	21	0.69	2,742	13	0.47
15	말레이시아	3,222	18	0.56	2,802	10	0.36
15	스리랑카	437	18	4.12	351	14	3.99
17	뉴질랜드	2,074	16	0.77	2,323	13	0.59
18	아르헨티나	748	15	2.01	818	1	0.12
18	호주	4,411	15	0.34	4,481	17	0.38
20	스페인	2,934	9	0.31	2,419	12	0.50

표 11. 부적합 사유별 현황

부적합 사유		부적합건수	중량(kg)	금액(\$)
합계		1,143	5,637,277	13,270,510
기준규격 위반	농·임산물	1	3,650	4,015
	가공식품	38	297,427	438,834
	건강기능식품	90	17,634	884,132
	식품첨가물	26	20,955	282,214
	기구 또는 용기·포장	162	249,054	1,061,482
식품첨가물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326	1,166,081	2,794,673
	허용외 식품첨가물	35	121,293	205,335
미생물 기준 위반	이물	222	1,763,041	3,947,483
	금속성이물	15	282,245	148,796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		93	299,060	532,109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		16	83,035	343,545
곰팡이 독소 잔류기준 위반		7	38,873	287,295
벤조피렌 잔류기준 위반		30	701,586	404,893
방사선 조사 위반		23	268,769	446,063
방사선 조사 위반		24	192,060	1,223,334
기타유해물질 위반		5	1,020	10,134
허용외 식품원료 사용		5	800	31,220
기타		25	130,695	224,951

4. 부적합 사유별 현황

2010년 부적합 1,143건 중에는 기준·규격 위반(317건)은 제품의 품질규격(영양소 함량 등),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361건)은 해당 제품별 식품첨가물(보존료, 산화황, 타르색소 등) 사용 기준 위반과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예: 아조루빈, 사이클라메이트)이며, 미생물 기준 위반(222건)은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세균발육), 식중독균(예: 바실러스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잔류농약(16건)은 BHC, bifenthrin, chorpriyfos, cpermethrin,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valerate, methidation, permethrin, triazophos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처리되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7건)은 니트로푸란계 물질,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콜, 곰팡이 독소(30건)는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이 기준을 초과로, 제조가공 중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23건), 살균목적으로 사용한 방사선 조사(24건), 국내 허용외 식품원료 사용(5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기타유해물질 검출(5건) 및 제조일자 변경 등 기타(25건)가 위반되었다(표 11).

2010년 부적합 사유별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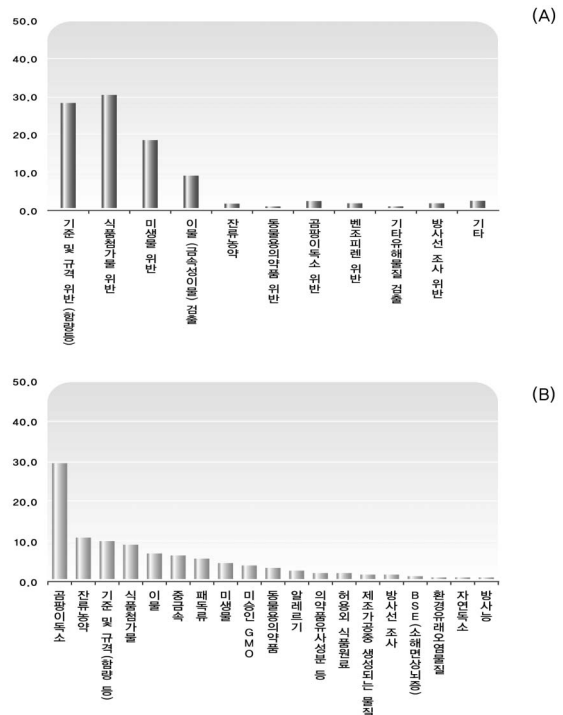


그림 3. 2010년 부적합 사유별 비교(%) : 식품의약품안전청(A), EU의 조기경보체계(B)

RASFF(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식품과 사료중 조기경보체계)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미생물 위반이 많은 반면, 유럽은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기준·규격(함량 등), 식품첨가물 위반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유럽연합에서 곰팡이 독소로 부적합 된 제품은 주로 땅콩과 견과류(피스타치오 등), 향신료 등으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여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14).

참고로, 유럽연합의 RASFF는 식품 및 사료의 조기경보체계로서 유럽 국가들의 수입 또는 유통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IV. 결론(또는 맺음말)

주요 곡물 및 가공식품의 원료 등을 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는 필수이며, 소비자들도 수입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자국민의 소비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입식품 업무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을 분석하여 수입단계에서 검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위해우려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은 제조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있어 이들 식품들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한편, 1998년부터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발간하여 식품협회 및 소비자들에게 배포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2006년 이후에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되었다. 향후에도 수입식품 통계를 알기 쉽게 정리·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2009)
2.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9)
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 (2009)
4.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공전 (2009)
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공전 (2009)
6.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관련 법령 (2009)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2009)
8.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2009)
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품목별 수출입 요령 (2009)
10. 관세청.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2008)
1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
12.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2008)
13.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2011)
14. European Commission, 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2010)